

## 군인복무규율

### 제39조의4 (청원휴가)

① 허가권자는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22, 2012.8.3>

1.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그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에는 30일 이내. 다만, 하사 이상 군인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

2.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5일 이내

2의2. 자녀가 혼인할 때에는 1일 이내

3.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일수 이내. 다만,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

가. 첫째 및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: 5일

나.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: 7일

다.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: 9일

4.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

5.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2일 이내

6.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2일 이내

6의2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일 이내

7.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에는 20일 이내

② 허가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

③ 허가권자는 임신 중인 군인이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사산(사산)한 경우에 그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09.9.29, 2012.2.22>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군인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 1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

2.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
3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
4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
5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④ 허가권자는 여성 군인에 대하여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
⑤ 허가권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.

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2.2.22> [본조신설 2007.9.20]